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면책 시행내규

제정 2016. 12. 6 내규 제29호
일부개정 2019. 5. 31 내규 제42호

제1조(목적)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31]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단의 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감찰 포함)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공단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이란 징계,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 및 경고·주의 등 처분을 말한다.
5. “경고·주의 등 처분”이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직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

혼계 처분을 말한다.

제4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직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감사관이 통보한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면책처리 할 수 있다.

1. 감사를 받는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전문개정 2019. 5. 31]

제5조(면책대상 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삭제 <2019. 5. 31>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이사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공단 면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단 소속 직원 중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인은 감사 실시 전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대상 직원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표 제1호」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직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심사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를 말한다)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 할 수 없다.

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이사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면책심사 처리) 감사인은 제8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요구 양정을 이사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회의 심사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책신청자 또는 관련자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인 면책심사대상 부서장은 소속부서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유의사항) 이 내규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42호, 2019. 5. 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5. 31>

적극행정 면책심사신청 안내(제7조 관련)

감사를 받은 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직원 본인
-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

2.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다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인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

감 사 명		감사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청사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감사부서 책임자 검토의견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종합의견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건 명						
심사대상자	부서명		직위(급)		성명	
심사결과						

년 월 일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위원	(서명 또는 날인)

